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합55813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피 고 전문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6. 6. 1.

판결 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41,4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55,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83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유한회사 한승종합건설, 세한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로서 조달청으로부터 2009. 11. 6. '계곡 ~ 신덕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포장공사'라 한다)'를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도급받았고, 2013. 2. 28. 이 사건 확포장공사중 7차수 공사를 공사대금 8,496,510,000원, 공사기간 2013. 2. 28.부터 2013. 12.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13. 4. 29.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이하 '벤트코리아'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대덕2교 및 대덕3교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45,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9.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13. 6. 12. 11,495,000,000원으로증액되었다가, 2013. 12. 12. 11,034,1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의 선급금보증

1) 피고는 2013. 6. 24. 벤트코리아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 825,451,000원, 선급금산정의 기준(계약)금액 2,063,627,000원, 계약금증금액11,495,000,000원, 보증기간 2013. 6. 24.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벤트코리아에게 선급금 825,451,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8. 당시 벤트코리아와 이 사건 선급금 중 남아있는

선급금 350,39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산근거는 별지 기재 선급금 정산내역표 참조)에 관하여 보증금액 350,396,200원, 보증기간을 2014. 1. 28.부터 2014. 10. 14.까지로 정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이에 관한 선급금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선급금보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1 피고는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벤트코리아에게 아래 각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함) 원고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벤트코리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선급금반환사유 : 벤트코리아의 당좌거래정지, 벤트코리아의 공사포기, 계약해제 또는 해지, 기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반환사유의 발생

다. 피고의 계약보증

피고는 2014. 1. 9. 벤트코리아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103,410,000원, 계약금액 11,034,100,000원, 보증기간 2013. 4. 29.부터 2014. 10.14.까지로 정하여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제3조(보증사고)

1 보증사고란 벤트코리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한다.

제5조(장기계속공사의 보증책임)

1 원고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원고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벤트코리아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벤트코리아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상범위)

1 피고가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실제손해액으로 한다.

2 실제손해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벤트코리아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및 정산

1) 벤트코리아는 2013.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2014.3. 18.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3. 24. 벤트코리아에게 위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원고와 벤트코리아는 2014. 3. 24.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2,482,7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마. 선급금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지급 신청

1)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선급금 중 남아있는 돈은 341,420,200원이었는데 원고의

요구에도 벤트코리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7.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위 341,420,200원 상당의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4. 6. 5.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계약보증금 1,103,41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나머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원고는 2014. 5. 초순경 중단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여, 2014. 5. 12.경 입찰에 참여한 3개의 업체 중 최저가 입찰을 한케이블텍 주식회사(이하 '케이블텍'이라 한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고, 2014. 5. 16.케이블텍에게 공사대금을 입찰금액인 9,889,000,000원으로 정하여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8, 19, 20, 23, 25, 2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벤트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고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였는데, 벤트코리아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중 남아 있는 341,420,200원,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1,103,4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선급금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급금보증금 지급 책임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남아 있는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중 남아 있는 341,42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로 인한 이 사건 선급금보증의 취소

가) 피고의 주장

벤트코리아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압류 사실은 피고가 보증 여부나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벤트코리아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5. 12.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 사건 선급금보증을 취소한다.

나) 판단

갑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벤트코리아의 채권자 A가 2013. 12. 4.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2013. 12. 19.경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선급금보증 계약이 체결된 2014. 1. 28.경에는 이 사건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취소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벤트코리아의 기망행위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묵비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선급금보증의 대상인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급금보증은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에 해당하는 선급금의 반환만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는 2013. 12. 16.경 준공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 따른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2호증의 기재, 전라북도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는 2013. 12. 16.경 준공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이 사건 선급금보증에서 선급금 산정의 기준(계약)금액인 2,063,627,000원은 이 사건공사대금 11,495,000,000원 중 일부인 4,046,328,000원에서 원고의 지분인 51%를 감안하여 계산한 것인 사실, 2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확포장공사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그 공사기간은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의 공사기간을 초과하는 사실, 3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니므로 차수별 공사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실, 4 이 사건 선급금보증에서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에 포함된 것만 보증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급금보증은 차수별 공사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공사대금 4,046,32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은 2,482,700,000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의 대상인 4,046,328,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선급금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약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보증금 지급 책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중단된 나머지 이 사건 공사를 케이블텍에게 맡기면서 1,337,600,000원[케이블텍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9,889,000,000원 - 8,551,40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 11,034,100,000원 -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 2,482,7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원고의 실손해의 범위 내에서 계약보증금 1,103,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이 사건 계약보증의 취소

피고는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묵비하는 기망행위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보증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이미 취하된상태였고,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위 가압류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보증의 대상인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보증의 대상은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에 포함된 부분에만 한정되는데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는 완공되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보증의 계약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전부인

11,034,100,000원이고, 보증금액은 그 10%인 1,103,410,000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보증은 이 사건 공사 전부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보증의 대상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확포장공사 중 7차수 공사에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실손해가 과다하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 2,482,700,000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중단된 나머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케이블텍의 공사대금 9,889,000,000원은 과다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실손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벤트코리아의 이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은 벤트코리아가 원고의 외주관리시스템에 기성내역을 세부공종별로 직접 입력한 뒤 원고의 협력업체포탈시스템을 통해 원고에게 기성을 청구하여 정하여진 사실, 벤트코리아가 기성대금 2,482,700,000원에 관하여 별 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2014. 5. 초순경 중단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최저가 입찰을 한 케이블텍을 공사업체로 선정하고 그 입찰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 2,482,700,000원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거나, 원고와 케이블텍이 중단된 나머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벤트코리아가 완공한 부분에 관한 계약보증 책임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벤트코리아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완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 2,482,70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5조 제1, 2항에서 원고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서 원고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원고는 벤트코리아에게 벤트코리아가 이행·완료한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벤트코리아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발주자가 체결한 이 사건 확포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이고, 전라북도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벤트코리아가 2014. 3.경까지 완료한 2,482,7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 사건 확포장 공사 중 7부터 9차수 공사를 2014. 12. 22.경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발주자인대한민국(조달청) 혹은 전라북도에게 이에 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 1,103,410,000원 중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관한 계약보증금 248,270,000원[벤트코리아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 2,482,700,000원 × 10%(공사대금에 대한 계약보증금 비율)]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계약보증금 855,140,000원(이 사건 계약보증금 1,103,410,000원 - 벤트코리아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24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장영채, 판사 심우성

별지

선급금 정산내역표

(부가가치세 제외)

구분	기상금				선급금종목				지급금종목				당락비율
	금액	8500원 (51.87%)	세탁간담 (14.87%)	환급금환계정 (14.87%)	금액	8500원 (51.87%)	세탁간담 (14.87%)	환급금환계정 (14.87%)	금액	8500원 (51.87%)	세탁간담 (14.87%)	환급금환계정 (14.87%)	
전 계	8,237,000,000	1,781,000,000	780,000,000	3,150,000,000	780,400,000	780,400,000	-	-	8,237,000,000	1,781,000,000	780,000,000	3,150,000,000	
2013년	4월	300,000,000	60,000,000	30,000,000	140,000,000	-	-	-	1,000,000,000	200,000,000	30,000,000	90,000,000	중 7-1, 2
	5월	300,000,000	100,000,000	70,000,000	200,000,000	40,000,000	-	-	1,000,000,000	200,000,000	70,000,000	20,000,000	중 7-1, 2
	6월	400,000,000	300,000,000	170,000,000	200,000,000	20,000,000	-	-	300,000,000	100,000,000	170,000,000	20,000,000	중 7-1, 2
	7월	300,000,000	100,000,000	100,000,000	40,000,000	80,000,000	-	-	200,000,000	20,000,000	100,000,000	40,000,000	중 7-1, 2
	8월	300,000,000	100,000,000	100,000,000	40,000,000	80,000,000	-	-	200,000,000	20,000,000	100,000,000	40,000,000	중 7-1, 2
	9월	300,000,000	100,000,000	100,000,000	40,000,000	80,000,000	-	-	200,000,000	20,000,000	100,000,000	40,000,000	중 7-1, 2
	10월	400,000,000	300,000,000	170,000,000	200,000,000	20,000,000	-	-	300,000,000	100,000,000	170,000,000	20,000,000	중 7-1, 2
	11월	300,000,000	100,000,000	100,000,000	40,000,000	80,000,000	-	-	200,000,000	20,000,000	100,000,000	40,000,000	중 7-1, 2
2014년	1월	400,000,000	300,000,000	170,000,000	200,000,000	20,000,000	-	-	300,000,000	100,000,000	170,000,000	20,000,000	중 7-1, 2
합계	8,237,000,000	1,781,000,000	780,000,000	3,150,000,000	780,400,000	780,400,000	-	-	8,237,000,000	1,781,000,000	780,000,000	3,150,000,000	
잔액 차액계산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